

입법예고 중법령명	<b>포교법 전부개정안</b>		
담    당	포교원 포교부 포교팀 (02-2011-1895)	입법예고일	2025년 2월10일 ~ 3월 1일

### 1. 이유 및 취지

- 포교법의 위상에 맞게 각 포교영역에 따라 새롭게 장을 구분하고, 교구본사와 사찰주지의 포교 의무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본 법을 제1장 총칙, 제2장 교구본사와 사찰의 포교, 제3장 전국 교구본사 포교 국장 회의, 제4장 전법단, 제5장 포교단체, 제6장 포교사로 장을 구분함.
- 나. 교구본사 주지의 포교에 대한 의무와 역할을 명확히 함(제7조 신설)
- 다. 사찰 주지의 포교 의무를 명확히 함(제8조 신설)
- 라. 포교사 체계 정리를 위해 일반, 전문 등 구분을 삭제하고, 포교사 자격 취득 등에 대한 사항을 사정위원회로 정리함(제16조, 제17조)

### 3. 포교법 전부개정안 전문

※ 첨부

# 포교법 전부개정안

불기 2520(1976)년 11월 29일 제정 / 불기 2521(1977)년 03월 23일 공포  
불기 2527(1983)년 04월 27일 개정 / 불기 2527(1983)년 05월 10일 공포  
불기 2538(1994)년 11월 09일 개정 / 불기 2538(1994)년 11월 15일 공포  
불기 2544(2000)년 03월 18일 개정 / 불기 2544(2000)년 03월 21일 공포  
불기 2559(2015)년 09월 08일 개정 / 불기 2559(2015)년 09월 17일 공포  
불기 2563(2019)년 11월 06일 개정 / 불기 2563(2019)년 11월 13일 공포  
불기 2568(2024)년 11월 05일 전부개정 / 불기 2568(2024)년 11월 20일 공포  
불기 2569(2025)년 3월 일 전부개정 / 불기 2569(2025)년 3월 일 공포

## 제1장 총칙

**제1조(포교의 목적)** 포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중생을 인도하고,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불국정토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교의 원칙)**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포교방침을 세운다.

1. 삼보에 대한 굳건한 신심을 확립한다.
2. 계·정·혜 삼학을 갖추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회 대중에게 홍보한다.
3. 대승 보살행을 배우고 원력을 세워 실천한다.
4. 생명, 평등, 평화, 자비, 정의, 화합의 불교정신으로 개인의 성장과 불국정토 구현을 위해 정진한다.

**제3조(포교의 지침)** 제1조 포교의 목적과 제2조 포교 원칙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포교 지침을 삼는다.

1. 삼보에 대한 굳건한 신심과 보살의 서원으로 교화한다.
2.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수행정진하여 불법홍포에 신명을 다한다.
3. 중생을 수순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화 방안을 수립한다.
4. 동사섭의 정신을 사회 속에 구현한다.
5. 종단 포교방침과 지침을 봉대하여 역량을 확대한다.

**제4조(포교할 권리와 의무)** 모든 종도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홍보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5조(포교 교육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불자는 종법·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교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불교단체 대표, 임원, 간부 등 지도급 지위에 있는 자는 종법·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포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자문단 및 위원회 구성)** 포교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포교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

힘을 갖춘 승려 및 재가자로 위원회와 자문기구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중무 회의에서 의결한다.

## 제2장 교구본사와 사찰의 포교

**제7조(교구본사의 포교)** ① 교구본사의 주지는 종헌·종법에 의해 포교국을 두고 교구 및 관할 지역의 포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하고, 포교·신도단체 및 신행단체의 지원과 지도의 의무를 갖는다.

② 교구본사의 주지는 포교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 집행하고, 말사 주지의 포교와 신행활동 및 포교예산편성 등의 내용을 인사고과에 반영한다.

③ 교구본사의 주지는 교구에 상임포교사 1인 이상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사찰의 포교)** ① 사찰의 주지는 종단과 교구본사의 관장하에 관할지역의 포교를 책임지며, 포교·신도단체 및 신행단체의 지원과 지도의 의무를 갖는다.

② 사찰의 주지는 종헌·종법에 의해 포교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한다.

## 제3장 전국 교구본사 포교국장 회의

**제9조(전국 교구본사 포교국장 회의)** 종단 포교의 주요 정책과 각 지역 포교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전국 교구본사 포교국장 회의(이하 포교국장 회의)를 둔다.

**제10조(포교국장 회의의 구성)** 포교국장 회의는 총무원 포교부장이 주재하며 포교부의 각 국장, 교구본사의 포교국장으로 구성한다.

**제11조(포교국장 회의의 직무)** 포교국장 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포교사업 계획과 정책 수립
2. 포교 진흥에 관한 계획 및 정책
3. 포교사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 지역 포교에 관한 주요 사항
5. 중앙과 교구 간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6. 교구와 교구 간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7. 기타 포교 관련 중요 사항

## 제4장 전법단

**제12조(전법단의 정의)** 전법단은 분야별, 지역별 포교활동 진흥을 위해 승려(비구, 비구니)와 재가자로 구성된 종단 직속기구이다.

**제13조(전법단의 구성)** 전법단은 승려로 구성된 지도법사단과 그 산하에 재가자로 구성되는 전법지원단, 전법후원단을 둘 수 있다.

**제14조(전법단의 운영)** 전법단 조직과 운영, 중단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 제5장 포교단체

**제15조(포교단체 설치 및 관리)** ① 포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포교부 산하에 포교단체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총무원장은 단체 설치에 대한 승인 및 해제의 권한을 갖는다.

② 포교부는 포교단체의 지도 감독 권한을 갖는다.

③ 각 포교단체의 설치와 운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 제6장 포교사

**제16조(포교사의 정의)** 포교사라 함은 종법에 의하여 자격을 갖추고 국내외 포교시설 및 단체에서 포교를 담당하는 재가자를 말한다.

**제17조(포교사의 자격)** ① 포교사의 자격은 자격고시에 합격한 후,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가 사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취득한다.

② 포교사 사정위원회 및 선발, 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제18조(포교사의 사명)** ① 포교사는 삼보를 호지하고 정법을 흥포하며 보살도 실천으로 불국토를 건설함에 헌신한다.

② 포교사는 본종의 종지에 입각하여 포교부의 지도를 받아 중단 및 사찰의 외호와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19조(포교사의 의무)** ① 포교사는 사찰, 포교기관, 사찰에서 설립한 시설 및 단체 등에서 정기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

② 포교사는 매월 활동 내용을 종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중단 및 해당 교구본사에 보고해야 한다.

③ 포교사는 포교부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20조(포교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포교사가 될 수 없다.

1. 국가법령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할 수 없는 자

2. 재가 총무원으로서 면직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포교사 자격을 제적당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21조(포교사의 징계)** ① 포교사가 직무에 불성실하거나 교리에 위배되는 행위, 중단 지시의 불이행 등으로 포교사의 사명과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포교사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징계한다.

② 징계위원회 및 징계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구성 및 설치된 전법단, 포교단체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